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개인연금파워 e 단기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[채권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10 월 22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10 월 08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, 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

	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 Balance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환매수수료 삭제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10 월 22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41 조(환매수수료)	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'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	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제 43 조(신탁	④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	(삭제)

계약의 변경)	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제 44 조(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)	①~③ (생략) <신설>	①~③ (현행과 동일) ④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,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단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, 또는 법 제 6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보상금액: 제 39 조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 *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 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. 단,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 3. 지급시기: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⑤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 4 항

		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제 45 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③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	(삭제)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	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환매수수료** 90일미만 : 이익금의 30%	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 **환매수수료** 없음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10 월 22 일 - 환매수수료 삭제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-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정사항 반영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,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. **구 분 / 부담비율 / 비고(부담시기)**	**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** 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
<table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환매수수료</td><td>90 일미만 :
이익금의 30%</td><td>환매시 1 회</td></tr>
</table>
※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
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
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
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.
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
<tr><th>집합투자기구 명칭</th><th>선취판매
수수료</th><th>후취판매
수수료</th><th>환매수수료</th></tr>
<tr><td>라이프플랜퇴직연금 Balance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td>90 일미만:
이익금의 30%</td></tr>
<tr><td>부과기준</td><td>매입시</td><td>환매시</td><td>환매시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table>
<tr><th>집합투자기구 명칭</th><th>선취판매
수수료</th><th>후취판매
수수료</th><th>환매수수료</th></tr>
<tr><td>라이프플랜퇴직연금 Balance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td>없음</td></tr>
<tr><td>부과기준</td><td>매입시</td><td>환매시</td><td>환매시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제 2 부
집합투자기구
에 관한 사항</td>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 전 1]</td><td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
나. 과세
[변경 후 1]</td></tr>
<tr><td>제 4 부
집합투자기구
관련회사에
관한 사항</td>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생략)
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(업데이트)
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/table>

[변경 전 1]

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,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(2014.1.1.부터)

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② 과세이연

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

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후]

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① 세액공제 :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「소득세법」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
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② 과세이연 :

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,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:

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.

* 다만,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(퇴직연금, 연금저축 등)이 연간 1200 만원 이하인 경우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제도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제 1 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0 년 10 월 22 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	2 등급 (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[요약정보]	**투자비용** (생략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생략) **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투자비용** (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) **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** (업데이트) **운용전문인력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등급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	2 등급 (높은 위험)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20 년 10 월 22 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(3→2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3.17%임에 따라 6 등급 중 3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20.19%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기타비용, 총보수·비용,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)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(업데이트)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